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10. 5(수)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76
제출일자	2022.09.23.
회부일자	2022.09.28.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소득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상승되고 있음

- 도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기술지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연속적·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재계약)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 사·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건강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 기타 경상북도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라.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수탁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재지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9,763㎡, 연면적 19,746㎡(지상 5층)

다. 소요예산 : 연 282백만원(기금 141, 도비 141)

○ 인건비 : 5명(지원단장 1, 분과장 1, 연구원 3)

○ 운영비 : 사무용품, 출장비, 기타운영비 등

○ 사업비 : 보건소 기술지원, 간담회 및 회의, 교육·홍보 등

※ 소요예산은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 매년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 심의기간 : 2022. 8. 31.(수) ~ 9.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

○ 심의위원 : 8명(당연직 4, 위촉직 4)

○ 심의결과 : 적정(정책기획관-8532호, 2022. 08. 02.)

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 심의기간 : 2022. 8. 31.(수) ~ 9.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심의위원 : 6명(위원장 1, 위원 5)

○ 심의결과 : 적격

4. 향후계획

- 2022.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2023. 1월 : 민간위탁 운영

5. 관련법령(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민에게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등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사무 범위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 시·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건강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 기타 경상북도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위탁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 3년간으로 한 것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해당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수탁자 선정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것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28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수행관련 인건비(5명)와 사무용품, 출장비 등의 운영비, 보건소 기술지원, 간담회 및 회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 국민건강증진법 >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지역보건법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및 지역보건법 제30조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법적기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022. 8. 31(수) ~ 9. 2(금)

* 공문 : 정책기획관-10124호(2022. 09. 07)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민에게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 이번 동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기술지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과 연속성,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의회동의 후 재위탁 운영에 따른 진행절차 등을 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